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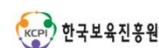
보육교사 자격기준 단체신청 설명회 일정

14:00~14:10	교육부 인사말
14:10~15:00	1교시 :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15:00~15:10	휴식
15:10~16:00	2교시 : 단체신청 방법 안내
16: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곧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노래소리가 들리는지
사전 테스트 바랍니다.

☑ 본 설명회는 유보통합 관련 통합교원 양성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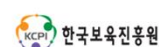
2024년

보육교사 자격기준 단체신청 설명회 일정

14:00~14:10	교육부 인사말
14:10~15:00	1교시 :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15:00~15:10	휴식
15:10~16:00	2교시 : 단체신청 방법 안내
16: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 본 설명회는 유보통합 관련 통합교원 양성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2024년

보육교사 자격기준 단체신청 설명회



2024 단체신청 설명회

보육교사 자격기준 (목차)

0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02.

결격사유 법률 시행

03.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04.

보육실습 세부기준

2024 단체신청 설명회

PART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개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3p.)

PART 1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인정 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 자격을 인정
- ▶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불가
- ▶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영유아보육법」 개정(제7153호, 2004.1.29.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2005.1.30. 이후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개정(제7785호, 2005.12.29.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 2006.12.30. 이후 시행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제도 (4p.)

PART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2011.8.4.), 시행(2012.8.5.)되어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21호, 2015.7.1.)에 따라 2015.7.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배치시기)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 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5p.)

PART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 | | |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
| 일반 어린이집 |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
| 가정 어린이집 |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 영아전담 어린이집 |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 40인미만 어린이집 | ▶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05. 1. 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음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5p.)

PART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 학과 전공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충족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

일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정교사 1급 or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자
- 초등학교 정교사 or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사회복지사 1급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간호사 +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가정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보육교사 1급 + 1년 이상 보육업무

영아전담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자
- 간호사 + 5년 이상 아동간호업무

40인미만 어린이집

- 2005.1.29.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5p.)

PART 1

보육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업무경력 충족,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및 1년 보육업무경력 충족,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2년 이상 보육업무경력 충족,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이상 학력,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음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5p.)

PART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당시(20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각각 법 제22조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6p.)

PART 1

수여권자 및 자격검정 · 발급기관

수여권자

교육부 장관

자격검정 및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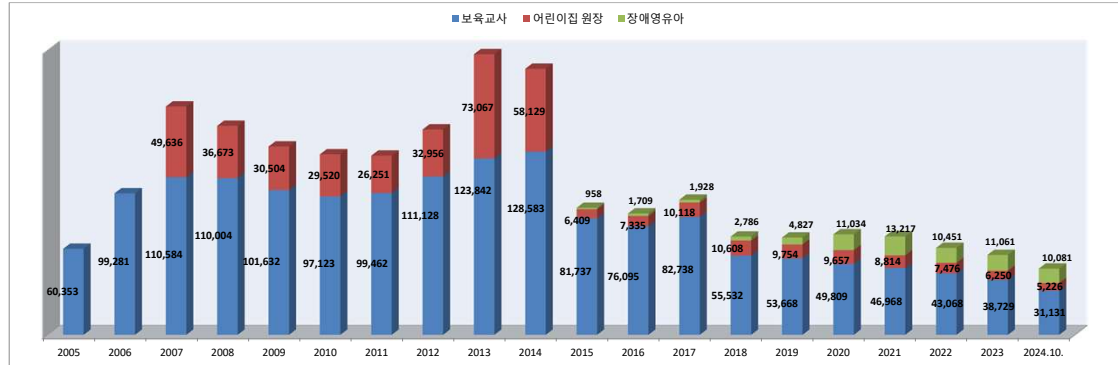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현황

PART 1

연도별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 (2014) 2급 교과목 상향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2017) 대면교과목 지정(9개), 실습기준 강화(160시간 → 240시간)



자격신청 및 발급 절차(8p.)

PART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신청절차	내용	주체
회원가입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인
개인 인사기록 카드작성	- 기본정보, 경력, 학력, 보수교육, 교육훈련 정보 작성 및 등록 - 자격증 제작을 위한 증명사진(3*4) 파일 등록	신청인
자격증 신청	- 자격종류 선택 -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학력 등 기본정보 확인 및 자격증 배송지 주소 등록	신청인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신청인

자격신청 및 발급 절차(8p.)

PART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http://chrdd.childcare.go.kr>

신청절차	내 용	주체												
서류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별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신청인												
추가  결격사유 확인	○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서류 제출 및 확인 * (1)성범죄 경력 확인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신청인 진흥원												
자격검정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처리기한)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검정 단계별 진행상태 <table border="1" data-bbox="545 752 1085 898"> <thead> <tr> <th>진행상태</th><th>내 용</th></tr> </thead> <tbody> <tr> <td>서류접수완료</td><td>신규/추가 서류접수 후, 자격검정 대기</td></tr> <tr> <td>보류</td><td>자격검정 결과 보완서류 추가 제출 시 재 검정 (보류 된 이후, 30일 이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td></tr> <tr> <td>인정</td><td>자격요건 충족으로 인정</td></tr> <tr> <td>불인정</td><td>자격요건 불충족으로 불인정</td></tr> <tr> <td>심의중</td><td>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대기</td></tr> </tbody> </table>	진행상태	내 용	서류접수완료	신규/추가 서류접수 후, 자격검정 대기	보류	자격검정 결과 보완서류 추가 제출 시 재 검정 (보류 된 이후, 30일 이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인정	자격요건 충족으로 인정	불인정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불인정	심의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대기	진흥원
진행상태	내 용													
서류접수완료	신규/추가 서류접수 후, 자격검정 대기													
보류	자격검정 결과 보완서류 추가 제출 시 재 검정 (보류 된 이후, 30일 이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인정	자격요건 충족으로 인정													
불인정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불인정													
심의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대기													
자격증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우편발송	진흥원												

2024 단체신청 설명회

PART 2



보육교사
자격기준 세부사항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항

PART 2

new

자격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24.3.19.개정 '24.9.20. 시행)

■ 관련법령 및 적용대상

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나. 적용대상

- '24.9.20. 이후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함
- 분실, 훼손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항

PART 2

new

자격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24.3.19.개정 '24.9.20. 시행)

■ 결격사유 확인 절차

- 성범죄경력 확인
- 양성교육기관에서 자격검정 신청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취합하여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일괄 조회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범죄경력)확인 : 제출 서류 별도 안내 예정

보육교사 자격

new

자격취득 시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결격사유 확인 절차

- 성범죄경력 확인
- 양성교육기관에서 자격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PART 2

를 취합하여 제출
회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항

new

자격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24.3.19.개정 '24.9.20. 시행)

결격사유 확인 절차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TBPE 검사 제외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불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PART 2

를 취합하여 제출
회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정사항

PART 2

new

자격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24.3.19.개정 '24.9.20. 시행)

I 결격사유 확인 절차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 의료기관을 통해 ☒ 의료기관 참조 의약품
 - 중독자가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 검사 가능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여부를
-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실시

*TBPE 검사 제외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불가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PART 2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I 자격기준

-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PART 2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I 제출서류

1.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필수)
2.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필수)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필수)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5.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필수)
6. 자격증 발급신청서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PART 2

대상별 적용기준

I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입학년도 기준

- 편·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재입학한 동학년생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 기준 적용
* 2017년에 3학년 편·재입학한 경우, 2015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적용

II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위취득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백석예술대학, 세계사이버대학,
영남사이버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학위취득일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나머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하고 학위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기준으로 이수 기준 적용
* 2014년에 보육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졸업 후, 2022년에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기준으로 적용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3조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확인방법 (14p)

PART 2

대상별 적용기준

- ✓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관 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 ✓ 대학 입학 또는 학위취득 시점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확인

구분		2016.8.1. 시행	2014.3.1. 시행	2005.1.30. 시행
교과목 이수기준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6개 영역 12과목 35학점
적용기준	대학 입학자	2017.1.1.~입학자 * 편입.재입학 등의 경우 1. 편입.재입학한 사람의 경우 편입.재입학한 동학년의 이수기준에 따름 2.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름	2014.1.1.~2016.12.31.입학자	2015.1.30.이후 입학자 및 편입,재입학,전과, 복수전공 신청자 부터
	학점은행제 등 학위취득자	2018.1.1.이후 학위취득자	2014.3.1.~2017.12.31. 학위취득자	2015.1.30.이후 교과목 이 수한 학위취득자 부터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개정, 2016.8.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개정, 2014.3.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05.1.29.개정, 2005.1.30.시행)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4p)

PART 2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 (대학) 2017.1.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 (학점인정 기관)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

영역	구분	교과목	과목(학점)
교사 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4p)

PART 2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 (대학) 2017.1.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 (학점인정 기관)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

영역	구분	교과목	과목(학점)
교사 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중복인정불가 -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영역은 교과목당 3학점이어야 하며,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	9과목 (27학점)
	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이상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5p)

PART 2

2. 대면교과목

-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교과목 (보육실습 포함)
- ✓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별도 실시
- ✓ 보육실무 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영역	교과목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사이버 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는 '성적증명서에 대면 이수 여부를 표기'하거나 '대면 교과목 확인서'를 통해 확인

보육교사 2급

2. 대면교과목

-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교과목
- ✓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 ✓ 보육실무 영역의 교과목 중 보

영역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사이버 대학 등 원

PART 2

영역

교사 인성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사이버 대학 등 원

대면 교과목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번 :
 ○ 연공학과명 :
 ○ 대면 교과목(명) 확인내역

구분	법정교과목	이수교과목	이수년도	대면교과목 이수 여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예) 보육교사론	(예) 2017	(예) 이수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아동발달론			(예) 이수
	아동심리			
	아동교육학	(예) 아동교육학		
	(또는 아동통론, 아동미술)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아동안전관리			
	(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른 '대면 교과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상기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지

학, 아동미술),
또는 아동생활지도)

과목 확인서'를 통해 확인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7p)

3.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공통

- 별도 심의 없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PART 2

적용대상

- 현행기준(2016.8.1. 시행) 대상자,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7p)

PART 2

3.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현행기준(2016.8.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현행기준(2014.3.1.)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적용대상) '18.1.1. 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영유아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7p)

PART 2

3.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현행기준(2016.8.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3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영유아발달' 교과목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대상) '17.1.1.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18.1.1.이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영아발달'·'유아발달'과목 이수로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 개정 영역(3개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7p)

PART 2

3.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현행기준(2016.8.1.)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적용대상) '14.1.1.이후 부터 '16.12.31.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14.3.1.이후 부터 '17.12.31.까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7p)

PART 2

3.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 인정범위 - 6개영역, 17과목 51학점 대상자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가 불가한 경우
(적용대상) '14.1.1.이후 부터 '16.12.31.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아발달, 유아발달	영아발달+영유아발달	
		유아발달+영유아발달	
		영유아발달 +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
		영유아발달 +	개정기준 3개 영역 중,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9p)

PART 2

유사교과목 심의 기준

- 법령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진행
(기 인정된 연도 및 학기의 유사교과목은 제외)
- 심의결과는 동 대학/학과의 당해 이수 교과목에만 적용(타 대학은 미적용)

유사교과목 심의 제출 서류

- 유사교과목 심의요청 공문(대학장 또는 학과장 발행)(부록9)
- 해당 교과목의 이수연도·이수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에 이수연도·이수학기 기재필, 영문 강의계획서의 경우 번역본 제출)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72p)

PART 2

유사교과목 심의 기준

- 법령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진행
(기 인정된 연도 및 학기의 유사교과목은 제외)
- 심의결과는 동 대학/학과의 당해 이수 교과목에만 적용(타 대학은 미적용)

유사교과목 심의 제출 서류

- 유사교과목 심의요청 공문(대학장 또는 학과장 발행)(부록9)
- 해당 교과목의 이수연도·이수학기 주차별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에 이수연도·이수학기 기재필, 영문 강의계획서의 경우 번역본 제출)

○○ 대학(교) 학과/○○ 교육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
경 유
제 목 ○○대학(교) ○○학과/○○ 교육원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중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학(교) ○○학과/○○ 교육원에서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유사교과목 심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심의대상자: 총 ○○명
나. 심의요청 내용

자격기준 구분	법령교과목	유사 교과목명*	이수연도/이수 학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대상자
17과목 51학점 (6개영역)	○○○○	○○○	○○○/○○학기		○○○
17과목 51학점 (3개영역)	○○○○	○○○○	○○○/○○학기		○○○외 ○○명

*대상자가 이수한 교의목 명

붙임 1. 심의대상자 명단.
2. 해당학기 강의계획서, 끝.

○○대학(교) 학과장/○○교육원장 직인

가단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함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요령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진행
미적용)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PART 2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I 자격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PART 2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I 제출서류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양성교육과정 수료 이전) 원본 (필수)
2.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료증명서 원본 (필수)
3.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필수)
4.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필수)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필수)
7. 자격증 발급신청서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확인방법(31p)

PART 2

☑️ 교육훈련시설 입학시점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확인

구분	2016.8.1. 시행	2005.1.30. 시행
교과목 이수기준	3개영역 22과목 65학점	6개 영역 12과목 35학점
교육훈련시설 입학기준	2016.8.1. 이후 입학자	2005.1.30. 이후 입학자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개정, 2016.8.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4호 (2005.1.29.개정, 2005.1.30.시행)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31p)

PART 2

1.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 (적용대상)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 (적용기준) 3개영역, 22과목 65학점 이수 필수, 보육실습 교과목은 보육교사 2급 기준 준용
- 과목당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2급 기준을 준용하여 80점 이상일 경우 인정

영역	교과목	과목(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및 지도, 아동생활지도,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지도, 아동수학지도·아동 과학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교재교구개발, 부모교육, 영유아건강지도, 영유아 영양지도, 아동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관리	18과목 (52학점)
보육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7학점)
전체	22과목(65학점) 이상	

2024 단체신청 설명회

PART 3



보육실습 세부기준

보육실습 세부기준 (20,33p)

PART 3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시기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 기준
실습 기관	보육정원 15명 이상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실습시작일 기준) * 실습기관의 공표받은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경우만 해당함 (평가중·재평가·미평가는 해당없음)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평가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보육실습 세부기준 (20,33p)

PART 3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시기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사	연속하여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 기준	참고사항 어린이집 원장의 지도교사 겸임 인정 조건으로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및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204)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평가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간접실습확인서(69p)

PART 3

간접실습 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2020년 1학기에 보육실습 6주 240시간 중 2주를 간접실습으로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성 명 : ○○○
 2.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3. 양성교육기관: ○○대학교 ○○학과
 4. 학번 :
 5. 간접실습 내용

담당교수	간접실습기간	간접실습시간	간접실습방법
○○○	20.02 ~ 02	○○시간	세부 운영방법 기재

년 월 일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간접실습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대체운영 가능(양성기관 내에서 직장·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등)을 실시하여야 함
 ※ 2주 간접실습 이수 시, 4주 직접실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필수
 ※ 6주 240시간 동안 직접실습을 이수한 것은 '보육실습확인서'만 제출

해당 양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13] 간접실습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PART 3

1

실습운영

실습시기 및 기간

인정시간

실습기관

지도교사

-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으로 운영
- 평가점수 80점(B학점) 이상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인정
- 3학점 기준으로 이수

*보육실습을 1, 2로 나누어 개설한 경우 합산한 학점이 총 3학점 이상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PART 3

2

실습운영

실습시기 및 기간

인정시간

실습기관

지도교사

- 6주 240시간
- 2회로 분할실습 가능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2회 분할 실습 방법

-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 (전·후 방학 포함)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 학기를 달리하여 보육실습 교과목(1,2)을 개설한 경우
개설학기 전후 방학에 각 1회씩 나누어 실시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PART 3

실습운영

실습시기 및 기간

3

인정시간

실습기관

지도교사

- 연속하여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만 실습 인정**
- 보육실습 시간은 하루에 **8시간**

※ 오전 9시부터 실습시간으로 인정하므로 오전 8시30분 ~ 오후 4시30분 실습은 인정불가
 ※ 휴게시간 포함할 경우 오전 9시 ~ 오후 6시(총 9시간) 실습가능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19,21,33,34p)

PART 3

실습운영

실습시기 및 기간

인정시간

4

실습기관

지도교사

구분	기준 (실습시작일)
공통사항	• 보육정원 15인 이상
선택사항 (두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에 해당할 것)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법률 제1989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6.26.개정, 2024.7.3.시행)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평가중, 재평가, 미평가는 해당 안됨) ⇨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19,21,33,34p)

PART 3
실습운영
실습시기 및 기간
인정시간
실습기관
5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보육실습 확인서 (28,39,67p)

PART 3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원장,학과장(교육원장) 직인을 받아 원본 제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

- 보육실습확인서(2017.1.1. 이후 양식) 원본
-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
-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유치원: 보육실습확인서 기관종류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기재 필수
(단, 보육실습 확인서 기관종류에 '방과후 과정 유치원' 미 기재 시 별도 확인서 제출)

보육실습 확인서

PART 3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성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기관종류	기관소재지
실습기관 인가 정원	최초인가일	년 월 일
평가 평가상태	평가일	0000년 0월 0일
주소	연락처	

* 어린이집은 운영형태(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 등) 기재. 유치원은 영유아대상 운영 여부 기재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을 3명 이내로 지도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13. 3. 1. 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침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 등록 및 제출
○ 보육실습 내용 시스팀 미등록자는 첨부서류(①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②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기재

보육실습 시작 당시의 어린이집 정보를 기재

*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제', '평가인증제'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완료** 기재

실습 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지도 확인 체크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직인 날인 전
보육실습 적합여부 검토 필수

* 해당 양식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자료실 > [14] 보육실습확인서 (2024.7.3.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되는 보육실습!

PART 3

1일 8시간 미만 실습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성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전종원	1991.11.11	한국보육진흥원 아동보육과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보육진흥원어린이집	기관종류	국공립
실습기관 인가 정원	100명	최초인가일	2024년 11월 19일
평가 평가상태	평가일	평가완료	
주소	0000년 0월 0일	연락처	

* 어린이집은 운영형태(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 등) 기재. 유치원은 영유아대상 운영 여부 기재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전종원	보육교사 1급	20-1-99999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을 3명 이내로 지도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10일(6주간)
실습시간	총 240시간(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의

실습 인정불가

불인정 되는 보육실습!

PART 3

특정요일에만 실습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전홍일	1991.11.11	한국보육진흥원 아동보육과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보육진흥원어린이집	기관종류	국공립
실습기관 인가 장일	100명	최초인가일	2024년 11월 19일
평가 정보	평가상태	평가완료	
평가일	0000년 0월 0일		
주소	연락처		

* 어린이집은 운영형태(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 등) 기재, 유치원은 장차추진실 운영 여부 기재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전영남	보육교사 1급	20-1-99999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인증을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여 : ☐ 남 : ☐)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10일(6주간)
실습시간	총 240시간(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위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 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평일(월~금)에 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므로

특정요일 '월~수' 10주의 비연속

실습 인정불가

불인정 되는 보육실습!

PART 3

30일(1일*8시간=240시간) 미만 실습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생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전홍일	1991.11.11	한국보육진흥원 아동보육과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보육진흥원어린이집	기관종류	국공립
실습기관 인가 장일	100명	최초인가일	2024년 11월 19일
평가 정보	평가상태	평가완료	
평가일	0000년 0월 0일		
주소	연락처		

* 어린이집은 운영형태(가정, 민간, 직장, 국공립 등) 기재, 유치원은 장차추진실 운영 여부 기재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전영남	보육교사 1급	20-1-99999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 실습기간 내, 보육실습인증을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여 : ☐ 남 : ☐)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10일(6주간)
실습시간	총 240시간(매주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위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 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보육실습은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오전 9시~오후 6시(총 9시간)의 실습

=8시간까지만 인정

10/16~11/23은 29일이므로

29일*8시간=총232시간

실습인정불가

**보육실습 유의사항!**

PART 3

실습기관 기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등급(의무평가제) 또는 인증유지상태(평가인증제) 유효한 어린이집
 미평가, 평가중, 재평가 사유 발생 등 여부 확인 必
 2회로 분할 실습의 경우, 각각의 분할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완료 상태 유지 必

실습연도별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연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 사용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서식자료] 에서 다운받아 사용

비연속 실습 증빙자료

어린이집의 가정학습기간, 실습생 병가, 코로나로 인한 휴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제출
 가정통신문(직인 必), 진료확인서, 코로나 관련 지자체 발행 공문 등

**보육실습 참고사항!**

PART 3

보육실습기관 선정 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활용

 투명한 보육정보를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통합정보공시

위반사실의 공표

보육정보공개 API

포털 이용안내

통합정보공시

통합정보공시 소개 >

어린이집·유치원
검색으로 찾기어린이집·유치원
위치로 찾기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 >**어린이집·유치원 검색으로 찾기**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검색으로 찾기

전체 ○ 어린이집 ○ 유치원

지역

지역전체

기관명

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Q 조회

상세검색

* 사고 발생·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운영 정지 또는 폐쇄된 어린이집의 경우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 즐겨찾기 목록은 확대노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www.childinfo.go.kr)

확인방법 : [통합정보공시] - [검색으로 찾기] - [지역 및 기관명 검색] - [평가] - [평가정보] 확인

보육실습 참고사항!

PART 3

보육실습기관 선정 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활용

 요약	 기본 현황	 영유아 및 교직원	 교육·보육과정	 예산·결산 등 회계
 영양 및 환경 위생	 안전교육·안전점검	 위반내역	 평가	 연장보육반

평가

평가 정보

평가 상태	평가완료
평가결과서 보기	평가결과서 보기 >
평가년월	2024.04
평가주기	3년

평가(인증) 이력

년월	상태
2024.04	평가중

실습 시작일 기준,
평가상태가 '평가완료' 이외의
(평가중, 재평가, 미평가 등) 인 경우
인정불가

2024 단체신청 설명회

PART 4



질의응답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대면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출석 수업의 8시간을 몇 차례에 나누어 수강이 가능한가요?

▶ 대면교과목의 8시간 출석수업 시간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되 총 출석수업 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1회 이상의 출석 시험은 별도 실시

보육실습 시작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완료' 였으나 실습기간 도중 '평가중' 으로 변경된 경우, 실습 인정이 가능한가요 ?

▶ 보육실습기관의 적합여부는 보육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시작 당시 「영유아보육법」제30조 <법률 제19898호>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서 인정됨
만약, 실습시작일 당시에 미평가·재평가 기관은 인정 불가함
또한, 분할실습의 경우 각각의 실습시작 시점에 실습기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 현장실습 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제로 B등급이었는데, 실습이 인정될 수 있나요?

중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합니다.

▶ 2024.2.1.이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입니다. 2017.2월 이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하였는데 새로운 기준(6주, 240시간)으로 보육실습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 기준

▶ 2017.3.1. 이전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완료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알쏭달쏭~ 보육교사 자격기준



2023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2023년 2학기에 '보육실습' 교과목으로 4주,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습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각각 인정이 되나요?

보육실습의 유사교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보육현장실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명칭이 달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보육실습 기준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연차(여름휴가 또는 연수) 혹은 병가일 경우 공백기간에는 보육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진 실습 지도교사에게 지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실습 지도교사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에게 실습 지도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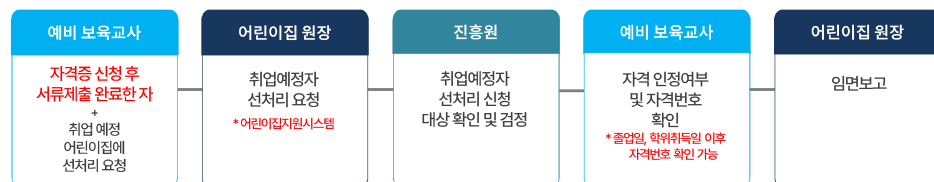
***실습지도교사 추가 및 변경 시
보육실습확인서 내 지도교사 정보 추가 작성과
어린이집 원장 날인 후,
지도교사의 1급 자격증 사본 추가 제출**

취업예정자 선처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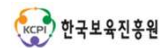
PART 3

목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여 보육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대상	• 어린이집에 채용예정인 예비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후 서류제출 완료한 자 !)
신청기간	•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예정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취업예정자 선처리 메뉴에서 신청

[취업예정자 선처리 절차]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국가자격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또는 콜센터 (1661-5666) 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